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대상 범위 제한 등〉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95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대상 범위 제한	4
2.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의 법률상 명시	10
3.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 삭제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2. 16.
3. 회 부 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규제는 처음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이 그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유출행위를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허가 및 신고제로 도입되었음. 국가핵심기술은 정부의 승인 하에 수출이 가능하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출원도 가능하여 비공개가 핵심인 ‘영업비밀’과는 다른 범주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주요 해외국가들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개정된 현행법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는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정보에서 사실상 원천 배제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에서 대국민 정보공개를 규제하는 법으로 변질됨. 비공개하는 범위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 하여 경계가 모호하고,

공개된 특허권과 저작권 대상 정보 등 이미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안전·보건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크게 제약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배치됨. 이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2019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유해물질 알권리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 최소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방향에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현행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는 부정한 방법·목적이 개입된 기술 유출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이었으나, 2019년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취득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확대되었음. 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한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이 조항이 환경·안전·보건 관련 공익제보를 막는 효과를 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4조가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없이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범위를 제한하고자 함.

현행법 제34조(비밀유지의무)제10호는 국가핵심기술 혹은 산업기술

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하지만 2019년 개정시 정보공개 및 소송 업무를 하는 자가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무리한 규제 효과를 낳고 있음.

정보공개제도는 해당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전제로 운용되기에 ‘누설’이 성립할 수 없고, 소송 업무 당사자와 대리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처벌할 경우 공적 목적 정보 사용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제10호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설계, 제조, 소자 등 기술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함(안 제9조의4제1항 개정).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12호 개정).

다. 제34조제10호를 삭제함(안 제34조제10호 삭제).

Ⅲ. 검토의견

1.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대상 범위 제한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으로 삼는 범위를 ‘설계, 제조, 소자 등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u>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u>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 ----- ----- ----- ----- <u>설계, 제조, 소자 등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9조의4¹⁾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공개·유출될 경우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 하더라도 목적 외로 유출될 경우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8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임.

다만, 2019년 개정 이후 정보의 내용·성격·공개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포괄적 비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정보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음²⁾.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설계, 제조, 소자 등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더라도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알 권리와 건강권 침해”…헌법소원 청구(KBS뉴스, 2020.03.05.)

기술정보가 아닌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 제2조3)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이러한 산업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지정되는 개념임.

즉,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하위 개념으로서, 산업기술 자체가 순수한 기술적 요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기술의 구현·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력 구성, 공정 운영 방식, 사업장 배치 등 다양한 정보가 결합된 개념임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음.

이와 같은 법률상 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 차. (생략)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 4. (생략)

정보를 ‘기술정보’와 그 외의 정보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특히, 기술정보 외의 정보라 하더라도 결합·분석을 통해 기술의 실질적 내용이 유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공개 범위의 구체화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 보완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도 이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기술정보의 범위는 설계·제조·소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구동, 검사, 평가, 배양, 소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바, ‘설계, 제조, 소자 등’이라는 표현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개정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설계, 제조, 소자 등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정보’로 한정함과 동시에,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라는 요건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개정 이후 현행 제14조제12호4)에 따라 적법한 경로로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취득 목적 외의 사용·공개가 금지됨으로써, 환경·안전·보건 관련 공익제보 등 공익적 활용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여부 판단 시 ‘부정한 유출 우려’라는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부정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기준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도록 한 구조에서는 정보공개 결정 단계에서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가 현행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략)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생략)

2.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의 법률상 명시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제14조제1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u>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2. <u>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u> -----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4조제12호⁵⁾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략)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에 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 제19조의2⁶⁾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

특히,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 제36조⁷⁾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생략)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전제가 되는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는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큼.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여 형벌 부과와 직결되는 규범에 대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산업통상부도 이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 삭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 삭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삭제>

현행법 제34조제10호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 및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이후 정보공개제도 및 사법절차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보공개제도는 해당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전제로 하면서도,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폭넓게 검토하는 과정을 전제로 운용되는 제도인 점에서, 정보공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취급하여 누설·도용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업무 수행자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인식시키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산업기술 관련 소송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까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정보의 이용이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및 소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와 정보공개 및 사법절차의 운영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제34조제10호가 삭제될 경우 비밀유지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정보공개 및 소송 업무 수행자가 전면적으로 제외되면서, 향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에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산업기술을 보유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제출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현행 제34조제10호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정보공개 및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가 적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바, 해당 규정의 삭제가 오히려 정보공개 및 소송 절차 전반에서 산업기술 정보의 활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국가·공공기관·대학·연구소, 산업기술 침해소송 관련 변호사·소송당사자 등을 통한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역시 정보공개 및 소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에 접근 가능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⁹⁾이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951호, 2025.12.05. 발의)